

## 전자제품 생산업체의 검사 및 측정설비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여부

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예규 (재조예-858, 2006.12.26)

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전자생산설비에 투자함에 있어 생산라인에 고정설치되어 제품생산에 필수적인 X-Ray 검사설비 및 IR/OCV 측정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.

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 박인호 조사관

### 【질 의】

(사실관계)

- ① 전자제품\*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전자제품은 전극생산공정, 전지조립공정, 활성화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함.  
\* 전자제품 : 건전지, 핸드폰 및 배터리 등
- ② 전자제품은 제품불량시 발화위험 등이 있어 생산 공정 중 X-Ray 검사 및 IR(내부저항)/OCV(전압) 측정을 거쳐야만 완성품을 생산할 수 있음.
- ③ X-Ray 검사설비 및 IR/OCV 측정설비는 생산공정 라인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자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설비임.
- ④ X-Ray 검사설비 및 IR/OCV 측정설비를 사업용자산(계측설비)으로 분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였음.

(질의사항)

회사가 전자생산설비를 투자함에 있어 전자생산공정에 필수적인 X-Ray 검사설비 및 IR/OCV 측정설비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용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

### 【회 신】

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른 생산설비와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생산라인에 고정설치되고 제품생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X-Ray 검사설비 및 IR/OCV 측정설비를 투자하는 경우 동 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업용자산에 해당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.

### 【해 설】

## 1.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개요(조특법 §26)

투자촉진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조업, 정보처리업 등 27개 업종의 기업이 기계장치 등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율을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임.

구 분		내 용
(1) 대상 업종		제조업, 광업, 건설업, 도·소매업, 전기통신업 등 27개 업종
(2) 공제대상 시설	공통 적용	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사업용 고정자산 →차량운반구, 공구, 기구 및 비품, 선박, 항공기,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
	업종별 추가규정 자산	① 건설업 : 포크레인 등 중장비 포함 ② 도소매업·물류산업 : 저온창고 등 물류시설 포함 ③ 관광숙박업·국제회의기획업: 건물 및 건물부착설비(승강기 등) 포함

☞ 감가상각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여부 분류

<별표5>: 임시투자세액공제 안됨	<별표6>: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됨
① 차량운반구, 공구, 기구 및 비품 ② 선박 및 항공기 ③ 건축물	사업에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 중 <별표5>를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 ※업종별로 다양한 사업용자산이 존재 사례) 제조업의 기계장치, 의료업의 의료기기, 방송업의 방송장비 등

## 2. 쟁점사항

X-Ray 검사설비 및 IR/OCV 측정설비가 <별표5>의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<별표6>의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

① <별표5>의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경우 →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음.
② <별표6>의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→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됨.

## 3. X-Ray 검사설비 및 IR/OCV 측정설비의 기구 및 비품 해당 여부 검토

### (1) 일반적인 기구 및 비품의 범위에 대한 검토

- 기구 및 비품의 정의에 대한 현행 세법의 명문규정은 없으나 **가구, 개인용컴퓨터, 전화기, 시계, 시험 또는 측정기기**와 같이 업종 고유의 생산설비가 아닌 범용성 있고 비교적 설치 및 이동이 간편한 자산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.

☞ 기구 및 비품의 종류를 직접 열거하였던 법인세법(1995. 3. 30. 개정전의 것)규정 참고

- 기구 및 비품 중 **시험 또는 측정기기**는 각종 물리량(物理量)이나 현상을 측정 또는 계량하기 위한 **저울, 시험기, 측정기, 계량기**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, 주로 재료, 재공품, 완제품 등의 물리량 등을 측정하거나 계량하기 위한 것으로 생산설비와는 별도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함.

## (2) 본질의 설비가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

- 본 질의사항인 X-Ray 검사설비 및 IR/OCV 측정설비는 일반적인 기구 및 비품과는 달리 **생산라인에 고정설치되고 다른 기계장치와 일체화되어 제품생산에 필수적인** 역할을 함.

- 기업이 투자시 통상 공장단위 또는 생산라인 단위로 신축 또는 증축하며 이 경우 투자의 개시여부 및 투자금액의 계산은 개별설비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**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.**

☞ 개별 투자설비 등이 **유기적으로 결합**되어야 당해 공장의 설립목적에 따른 **특정제품의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용 투자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는 것임**(제조예 46019-40, 2002. 3. 18. ; 서이 46012-10846, 2001. 12. 31.).

- 결국 다른 생산설비와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고정설치된 설비를 검사 또는 측정의 기능적 특성만을 고려하여 기계장치와 분리하여 기구 및 비품으로 분류할 경우 **기존 예규와 상충**되며, 사업용자산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할 우려가 있음.

## 4. 결론

다른 생산설비와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생산라인에 고정설치되고 **제품생산에 필수적인** 역할을 하는 X-Ray 검사설비 및 IR/OCV 측정설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의 **사업용자산에 해당**되어 **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이 가능함.**

### 【관련 법령】

-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【**임시투자세액공제**】

-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【임시투자세액공제】
-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【사업용자산의 범위】
-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【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】

**【관련 예규】**

1. 별표6에 해당하는 사업용자산인 경우 세액공제 대상임.

□ 서면2팀-1924, 2006. 9. 27.

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을 의미함.

□ 서면2팀-760, 2006. 5. 4.

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속하는 것임.

□ 서면2팀-414, 2005. 3. 16.

주유소의 주유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함.

2. 별표5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 세액공제 대상 아님.

□ 서면2팀-1484, 2005. 9. 16.

공구 및 기구를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음.

□ 서면2팀-387, 2005. 3. 8.

계측기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.

□ 서면2팀-2252, 2004. 11. 5.

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기구 및 비품으로 분류되는 전산시스템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.

※ 본 해설은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충분히 검토하시고, 전문가와 상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.